금융위원회

의결 제2026-115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관	제니스투자자문㈜
임 원	甲

2. 조치내용

(1) 임원 선임 또는 해임 관련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

◦ 제니스투자자문㈜ : 과태료 403.2백만원 부과

◦ 임직원에 대한 조치

- 甲: 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(문책경고 상당)

(2) 주요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

◦ 제니스투자자문㈜ : 과태료 144백만원 부과

◦ 임직원에 대한 조치

- 甲: 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(문책경고 상당)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(1) 임원 선임 또는 해임 관련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

□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(사임 포함)하는 경우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금융회사와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,

◦ 제니스투자자문㈜는 20xx.x.xx.~20xx.x.xx. 기간 중 발생한 총 O건의 임원 선임·해임 사실을 7영업일 이내에 공시 및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

(2) 주요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

1) 소송 신청·확정 사실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

□ 금융투자업자는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지체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함에도,

◦ 제니스투자자문㈜는 20xx.x.xx. 양수금 지급 소송이 신청되고 20xx.x.xx. 동 소송이 확정된 사실과, 20xx.xx.x. 투자금 반환 소송이 확정된 사실을 보고 및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

2) 상호 변경 등 금융투자업자의 보고 의무 위반

□ 금융투자업자는 상호 변경, 대주주 지분 변동, 본점 이전의 주요 경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, 지점 신설의 경우 그 사유발생일이 해당하는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,

◦ 제니스투자자문㈜는 20xx.x.x.~20xx.xx.x. 기간 중 발생한 상호 변경, 본점 이전, 대주주 지분 변동의 주요 경영상황을 7일 이내에, 지점 신설을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

나. 근거법규

○ 「자본시장법」 제33조(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) 제3항

○ 「자본시장법」 제418조(보고사항)

○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36조(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) 제2항 제5항

○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371조(보고사항 등) 제1항

○ 「지배구조법」 제7조(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) 제1항